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2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김태년 · 민병덕 · 윤종균
김문수 · 이광희 · 복기왕
김 윤 · 이재정 · 김한규
한준호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는 법률 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는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u> <u>시행일</u>부터 <u>5년간</u> 효력을 가 진다.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u>2031년 12월 31일</u> <u>까지</u>-----.